

	<h1>보도자료</h1>	2022. 2. 7. (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65 -
 “당신의 어려움, 이제 한국판 설록홈즈가 해결합니다”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 공약 발표

- OECD 중 대한민국만 없는 ‘탐정제도’, 외국에선 미야실종자 찾기 및 수사소송 사실 조사에 긍정적 효과
-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 업무범위 규정 등 관련 제도 마련 공약 발표
- 이재명 후보, “불법 방치 않고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6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제도 공백으로 발생하는 불법홍신소 난립 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인탐정업을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노력 등이 포함된 전방위적 종합대책이다.

현재 홍신소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좋지 않은 편으로, 이들의

불법 도청이나 폭력 사례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올해 초 한 흥신소에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불법적으로 제공해 끝내 피해자의 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원인이 관련 제도의 공백 때문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 및 실종자 찾기, 수사·소송단계에서의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은 모두 관련 제도를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자격증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 첫 번째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를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실종자 수색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 권리 보호 및 피해조사 등으로 공인 탐정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합법적 업무만을 의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격한 운영으로 현재 문제 시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관련 시장 및 산업 정착의 배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권력과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재산상 손실, 협박과 폭력피해 및 피살 사례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탐정업법 도입 관련 Q&A

Q. 탐정업의 현황은?

A. 현재 탐정업은 자유업임

- 2020. 8.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탐정사’, ‘탐정업’ 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유업이 되어, 누구나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됨
-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인정되자, 20여 개의 민간탐정협회가 난립하여 민간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임. 탐정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숫자는 8천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며, 그 외 음지에서 활동하는 불법홍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음
- 합법화할 경우, 최소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2020년 7월 28일, 한경 관련 기사 중.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2880711>)

Q. 해외의 사례는?

A. 해외에서는 공인탐정산업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탐정업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경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약 6만 명, 독일과 영국에서는 각각 2만여 명이 활동 중이며 일반적으로 면허나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도 주에 따라 다르나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고, 영국은 면허와 자격 없이도 탐정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2001년부터 ‘민간보안산업법’ 제정을 추진 중임
- 프랑스도 신고만 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허가제·자격제로 변경
- 탐정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사기 조사, 특정인의 소재 파악 등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와 스페인에서 예외적으로 정부 위임에 따라 형사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56062#home>)

- 현재 국내에서는 컨트롤리스크(Control Risks), 크롤 (Kroll), 핑커톤 (Pinkerton) 등 세계적인 기업탐정회사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분야 탐정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Q. 공인탐정업에 대한 여론은?

A. 공인탐정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임

- 경찰청이 2017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공인탐정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3%가 찬성 의견을 보였음
 - 경찰청 관계자는 “20대(80.6%)와 30대(73.8%)가 가장 많이 찬성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발언, ‘탐정: 더 비기닝’ 같은 영화 등이 흥행하는 등 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도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음

Q. 지금까지 공인탐정업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A. 공인탐정제 도입 추진은 수차례 추진된 사업임

-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으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으나 감독과 관리 권한에 대한 부처 이견 등으로 통과되지 못함
- 퇴직 경찰관 등은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으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여 해당 제도의 통과를 고대하고 있음
- 대한변협 등에서는 변호사법(제34조)에 의해 소송단계에서의 사실 조사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변호사가 사실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일부에서 탐정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가능성, 퇴직 경찰들의 전관예우 가능성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인탐정업법 등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